



## 정 선 군

군보는 공문서로의 효력을 갖는다



제203호 2009. 10. 7. (수)

### 【고 시】

- 정선군고시 제2009-136호 주택건설 사업계획(변경) 승인 고시..... 1
- 정선군고시 제2009-140호 도전권역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시행계획(5차) 고시.....2
- 정선군고시 제2009-142호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고시.....3

### 【공 고】

- 정선군공고 제2009-643호 2009년도 참나무시들음병 피해목 제거사업 공고.....4
- 정선군공고 제2009-649호 분묘개장공고(2차).....6
- 정선군공고 제2009-650호 분묘개장공고(1차).....7
- 정선군공고 제2009-651호 정선군 휴양단지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0
- 정선군공고 제2009-653호 수용재결신청에 따른 열람 공고.....13
- 정선군공고 제2009-657호 2009. 6. 1기준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14
- 정선군공고 제2009-658호 개별주택가격 정정 결정·고시.....15
- 정선군공고 제2009-660호 2009년 9월 발송 재산세 납세고지서 반송분 공시송달.....16
- 정선군공고 제2009-661호 765kV 신태백-신가평송전선로 수용재결신청 열람공고.....17
- 정선군공고 제2009-665호 지방세 납부고지서 공시송달..... 18

□ 발행 : 정선군청 기획감사실 (전화:560-2223, FAX:560-2592)



## 정선군고시 제2009-136호

## 주택건설 사업계획(변경) 승인 고시

주택법 제16조 제3항 규정에 의거 주택건설 사업계획을 변경승인하고 동법 제16조 제5항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 합니다.

2009. 9. 25.

정 선 군 수

1. 사 업 명 : 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승인
2. 사업위치 : 정선군 남면 문곡리 92번지의 26필지
3. 사업규모
  - 가. 대지면적 : 15,788㎡
  - 나. 연 면 적 : 31,060.004㎡
  - 다. 규 모 : 분양아파트 지상15층, 4동 297세대 및 부대복리시설
4. 변경사항

| 구 분   | 변 경 전              | 변 경 후                   | 비 고  |
|-------|--------------------|-------------------------|------|
| 위 치   | 남면 문곡리 92외 26필지    | 남면 문곡리 92외 26필지         | 변경없음 |
| 사업주체  | 서주종합건설(주) 이순복      | 서주종합건설(주) 이순복           | 변경없음 |
| 대지면적  | 15,788㎡            | 15,788㎡                 | 변경없음 |
| 연 면 적 | 31,060.004㎡        | 31,060.004㎡             | 변경없음 |
| 사 업 비 | 33,037,000천원       | 36,977,200천원            |      |
| 분양방법  | 분 양                | 분 양                     | 변경없음 |
| 규 모   | 4동 297세대           | 4동 297세대                | 변경없음 |
| 층 수   | 지상 15층             | 지상 15층                  | 변경없음 |
| 사업기간  | 2005. 1 - 2007. 12 | 2005. 1 - 2010. 10. 20. | 변경없음 |
| 발코니   | -                  | 확장형                     |      |

정선군고시 제2009-140호

도전권역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시행계획(5차) 고시

정선군 임계면 도전권역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시행계획(5차)을 농어촌정비법 제 27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9. 9. 30.

정 선 군 수

1. 사 업 명 : 도전권역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2. 사업의 목적

농촌마을의 경관개선, 생활환경정비, 소득기반확충 등을 통해 지역주민이 살고 싶고 도시민이 찾고 싶은 쾌적한 정주공간으로 조성해 희망과 활력을 고취함으로써 지역 사회의 지속적 유지

3. 사업의 내용 및 구역

- 위 치 : 강원도 정선군 임계면 가목리, 도전1·2리, 직원1·2리
- 규 모 : 법정리 3, 행정리 5, 자연마을 15
- 면 적 : 7,008ha(농경지 330, 임야 6,501, 기타 177)
- 가구 및 면적 : 187호(농가 121, 비농가 66), 460명(남 250, 여 210)
- 사업내용(5차) : H/W부분 5개사업

－ 산촌 경관조성, 자연산책로, 물놀이보, 야영장, 개울족탕

4. 사 업 비 : 916,021천원(보조 916,021, 자부담 - )

※ 전체분 : 6,786백만원(보조 6,201백만원, 자부담 585백만원)

5. 사업예정기간 : 2009년(전체분 2007년 ~ 2011년)

6. 사업의 효과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으로 인하여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 및 농촌사회의 지속적 인 발전에 기여

7. 사업시행자 : 정선군수(한국농어촌공사 일괄위탁 시행)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정선군고시 제2009-142호

##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정선군의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이 제173회 정선군의회(정례회)에서 의결됨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133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9. 9. 30.

정 선 군 수

(단위:천원)

| 회계별 / 구분    | 예산액         | 기정예산액       | 증△감        | 증감율     |
|-------------|-------------|-------------|------------|---------|
| 합 계         | 349,160,042 | 337,291,677 | 11,868,365 | 3.52%   |
| 일반회계        | 304,756,422 | 292,296,109 | 12,460,313 | 4.26%   |
| 기타특별회계      | 35,269,892  | 34,701,840  | 568,052    | 1.64%   |
| 의료급여기금      | 561,866     | 544,838     | 17,028     | 3.13%   |
| 정선군임대아파트운영  | 931,796     | 931,796     | 0          | 0.00%   |
| 농공단지조성및관리사업 | 58,781      | 58,781      | 0          | 0.00%   |
| 기반시설부담금     | 580,959     | 612,042     | △31,083    | △5.08%  |
| 장기미집행시설대지보상 | 600,000     | 600,000     | 0          | 0.00%   |
| 주택사업        | 125,393     | 125,393     | 0          | 0.00%   |
| 주차장         | 1,850,360   | 1,850,360   | 0          | 0.00%   |
| 수질개선        | 30,560,737  | 29,978,630  | 582,107    | 1.94%   |
| 상수도사업(공기업)  | 9,133,728   | 10,293,728  | △1,160,000 | △11.27% |

## 정선군공고 제2009-643호

## 2009년도 참나무시들음병 피해목 제거사업 공고

참나무시들음병 피해목 제거사업에 따라 산림소유자에게 피해목 제거사업 실행사항을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법률 제2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5조 제2항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 하고자 합니다.

1. 사 업 명 : 2009년도 참나무시들음병 피해목 제거사업
2. 사업목적 : 피해목 제거로 참나무시들음병 피해확산 저지 및 건전한 산림육성
3. 사업내용 : 참나무시들음병 해목 제거 429본
4. 사업기간 : 2009. 10월 ~ 11월
5. 대상사업지 내역 : 붙임 참조
6. 공고기간 : 2009. 9. 23 ~ 10. 12(20일간)
7. 산주의견 수렴 : 공고기간 내
8. 공고에 따른 조치사항

본 공고에 이의가 있을 경우 공고 기간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으며, 기간내 이의가 없을 경우에는 정선군에서 일괄사업 추진할 계획이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정선군청 환경산림과 [ ☎ 033-560-2167 ]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참나무시들음병 방제 대상지 조서 1부. 끝.

정 선 군 수

## 2009년 참나무시들음병 제거사업 대상지 필지별 조서

## [북평면]

| 소 재 지 |    |      |    | 제거대상목 현황 |    | 소 유 자 |     | 비 고 |
|-------|----|------|----|----------|----|-------|-----|-----|
| 읍.면   | 리  | 지 번  | 지목 | 경급       | 본수 | 성 명   | 주 소 |     |
| 북평    | 북평 | 산1   | 임  | 28/16-34 | 73 |       |     |     |
| 북평    | 북평 | 산277 | 임  | 28/16-34 | 25 |       |     |     |

## [신동읍]

| 소 재 지 |    |         |    | 제거대상목 현황 |    | 소 유 자 |     | 비 고 |
|-------|----|---------|----|----------|----|-------|-----|-----|
| 읍.면   | 리  | 지 번     | 지목 | 경급       | 본수 | 성 명   | 주 소 |     |
| 신동    | 운치 | 산282    | 임  | 24/20-50 | 50 |       |     |     |
| 신동    | 조동 | 산54-5   | 임  | 22/20-32 | 40 |       |     |     |
| 신동    | 방제 | 산87-144 | 임  | 22/20-32 | 40 |       |     |     |
| 신동    | 방제 | 산124    | 임  | 24/20-34 | 93 |       |     |     |
| 신동    | 방제 | 산87-152 | 임  | 22/20-32 | 60 |       |     |     |
| 신동    | 방제 | 산119-1  | 임  | 24/18-34 | 32 |       |     |     |
| 신동    | 고성 | 산18     | 임  | 22/20-32 | 16 |       |     |     |

## 정선군공고 제2009-649호

## 분묘개장공고(2차)

장사등에관한 법률 제27조, 제28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8조, 제19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분묘개장 공고 하오니 당해분묘의 설치자나 연고자 또는 관리자는 공고기간내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만약 기간내에 신고가 없는 분묘에 대하여는 무연분묘로 간주하여 관계법령의 절차에 의거 임의로 개장함을 공고합니다.

- 아 래 -

## 1. 분묘의 소재지 및 기수

| 소 재 지       | 지 번            | 지 목 | 분묘수 | 비고 |
|-------------|----------------|-----|-----|----|
| 정선군 신동읍 고성리 | 817-9<br>833-1 | 전   | 2   |    |
| “           | 산 17           | 임야  | 1   |    |

2. 개장사유 : 동강전망 자연휴양림 조성공사 진입도로 구간 편입

## 3. 개장방법

- o. 유연분묘 : 연고자 협의후 개장
- o. 무연분묘 : 공고기간 경과후 관련법령에 의거 임의개장

## 4. 이전장소

- o. 정선군 사북읍 사북리 247번지(정선군 하늘터)
- o. 화장후 납골당 안치

5. 공고기간 : 신문공고 게재일로부터 2개월

6. 신 고 처 : 강원도 정선군 정선읍 봉양리 267번지

정선군청 환경산림과(☎033-560-2330)

7. 신고요령 : 매장자와 연고자간의 연고권을 확인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족보, 묘지신고서 등을 구비하여 상기신고처에 신고.

2009. 9. 29.

위 공고인 : 정 선 군 수

## 정선군공고 제2009-650호

## 분묘개장공고(1차)

장사등에관한 법률 제27조, 제28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8조, 제19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분묘개장 공고 하오니 당해분묘의 설치자나 연고자 또는 관리자는 공고기간내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만약 기간내에 신고가 없는 분묘에 대하여는 무연분묘로 간주하여 관계법령의 절차에 의거 임의로 개장함을 공고합니다.

- 아 래 -

## 1. 분묘의 소재지 및 기수

| 소 재 지       | 지 번   | 지 목 | 분묘수 | 비고 |
|-------------|-------|-----|-----|----|
| 정선군 신동읍 고성리 | 832-4 | 전   | 1   |    |

## 2. 개장사유 : 동강전망 자연휴양림 조성공사 진입도로 구간 편입

## 3. 개장방법

- o. 유연분묘 : 연고자 협의후 개장
- o. 무연분묘 : 공고기간 경과후 관련법령에 의거 임의개장

## 4. 이전장소

- o. 정선군 사북읍 사북리 247번지(정선군 하늘터)
- o. 화장후 납골당 안치

## 5. 공고기간 : 신문공고 게재일로부터 3개월

## 6. 신 고 처 : 강원도 정선군 정선읍 봉양리 267번지

정선군청 환경산림과(☎033-560-2330)

## 7. 신고요령 : 매장자와 연고자간의 연고권을 확인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족보, 묘지신고서 등을 구비하여 상기신고처에 신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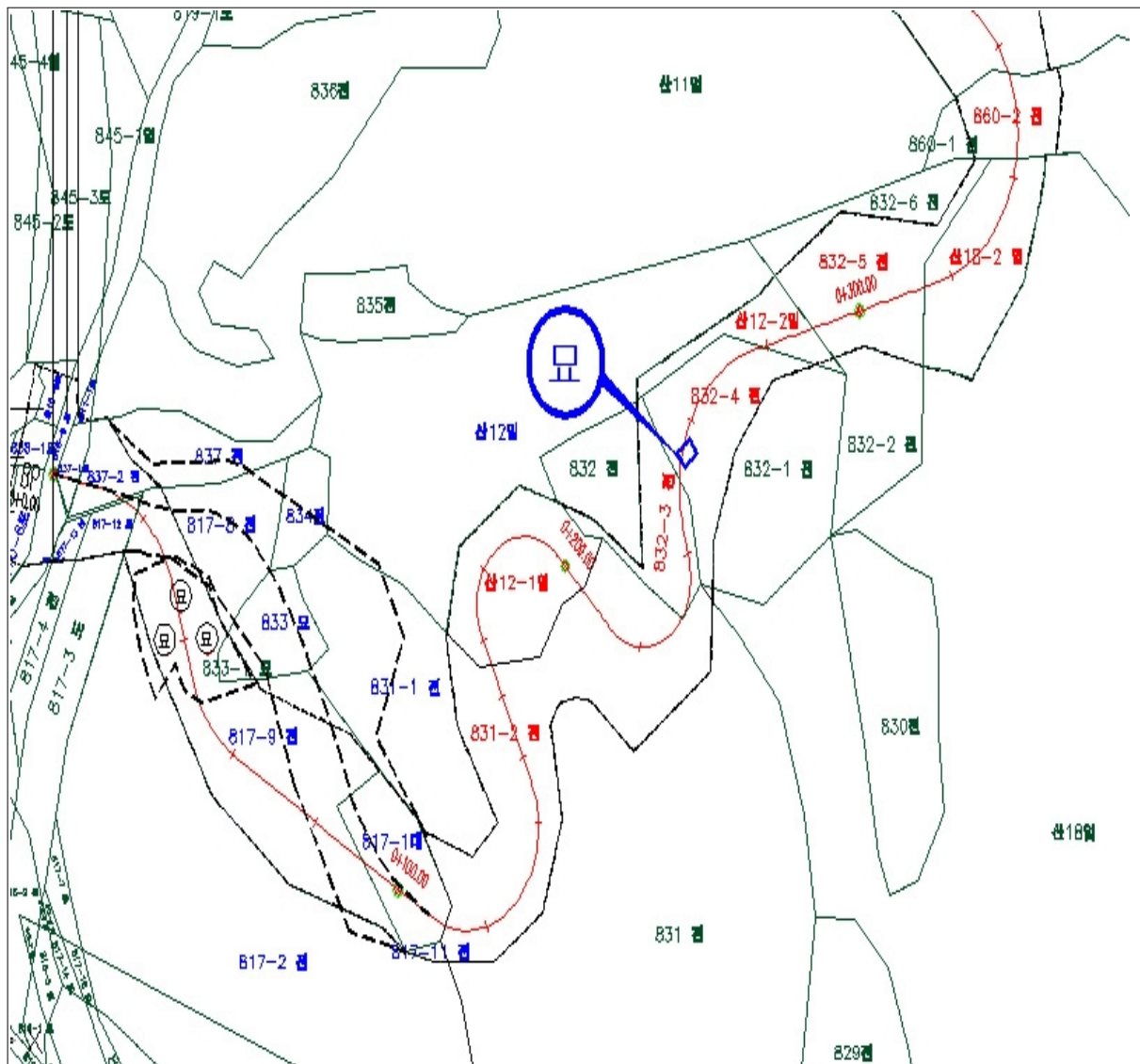
2009. 9. 29.

위 공고인 : 정 선 군 수

## 지 장 물 현 황

| 지장물 명 | 묘지  | 지장물종별               | 수량, 규격      | 비 고 |
|-------|-----|---------------------|-------------|-----|
|       |     | 墓                   | 1<br>(무연단장) | 이장  |
| 지 장 물 | 위 치 | NO. 0+ 300.00       |             |     |
| 소 재 지 | 주 소 | 정선군 신동읍 고성리 832-4번지 |             |     |

## 위 치 도



# 사 진 대 장

□ 정선읍 신동읍 고성리 832-4번지 (묘 1기)



## 정선군공고 제2009-651호

## 정선군 휴양단지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정선군 휴양단지 관리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취지 및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정선군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09. 9. 28.

정 선 군 수

## 1. 개정취지

- 정선군 시설관리공단과의 위탁계약 체결이후 도사곡 산막 등 휴양지내 시설물 확충 및 보수, 관리인력 증원에 따라 보다 현실적인 시설 사용료 징수를 통한 효율적인 휴양지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 정선군휴양단지관리조례 제9조, 제11조 제2항 일부개정
- 정선군휴양단지관리조례 【별표 2】 개정
- 기타 제명 띄어쓰기 및 일부 조문 개정

## 3. 의견제출

- 이 조례 및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10월 17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정선군 관광문화과 관광진흥팀으로 우편 또는 FAX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의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4. 제출처 및 문의사항

## ○ 제 출 처

－ 주 소 : 강원도 정선군 정선읍 봉양리 267

－ 받 는 이 : 정선군 관광문화과 관광진흥팀 관광진흥담당

－ 우편번호 : 233-804

－ F A X : 033-560-2593

## ○ 문의사항

－ 관광진흥담당(033-560-2365), 담당자(033-560-2564)

붙임 : 정선군휴양단지관리조례 일부개정(안) 1부.

정선군조례 제 호

### 정선군휴양단지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정선군휴양단지관리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정선군휴양단지관리조례”를 “정선군 휴양단지 관리조례”로 한다.

제1조 및 제2조제1호 중 “지역균형개발및지방중소기업육성에관한법률”을 각각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2조제2호 중 “폐기물관리법 제2조의 제2호”를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2호”로 한다.

제4조제6항 중 “지방재정법 및 동법시행령과 정선군공유재산관리조례 및 동조례시행규칙”을 “「지방재정법」 및 같은 법 시행령과 「정선군 공유재산관리조례」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으로 한다.

제5조제4항 중 “정선군공유재산관리조례시행규칙 별지 제21호서식”을 “「정선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20호서식”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정선군공유재산관리조례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을 “「정선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7호 및 제8호서식”으로 한다.

제8조제2항 및 제10조제1항 중 “정선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를 각각 “「정선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9조 중 “공공시설(주차장, 야영장, 산막)”을 “공공시설(야영장, 산막)”으로 한다.

제11조제2항 중 “정선군민과 군민소유차량”을 “정선군민”으로 한다.

제1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5조(준용규정) 이 조례에서 명시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정선군 공유재산관리조례」 및 「정선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정선군 물품관리조례」를 준용한다.

별표2를 별지와 같이 한다.

###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별표 2】 ⇒ 《개정》

## 시설이용료 요금표(제9조 관련)

| 현 행      |                                              |        |         |
|----------|----------------------------------------------|--------|---------|
| (단위 : 원) |                                              |        |         |
| 시설명      | 구 분                                          | 이 용 료  |         |
| 주차장      | 이륜차<br>승용차<br>대형차                            | (당일)   | (체류)    |
|          |                                              | 500    | 1,000   |
|          |                                              | 2,000  | 4,000   |
|          |                                              | 4,000  | 8,000   |
| 야영장      | 소형텐트(5인이하)                                   | 4,000  |         |
|          | 중형텐트(6~9인)                                   | 5,000  |         |
|          | 대형텐트(10인이상)                                  | 6,000  |         |
| 산 막      | 7평형<br>15평형<br>23평형<br>59평형(8평)<br>59평형(27평) | (비수기)  | (성수기)   |
|          |                                              | 30,000 | 40,000  |
|          |                                              | 50,000 | 70,000  |
|          |                                              | 70,000 | 100,000 |
|          |                                              | 30,000 | 50,000  |
|          |                                              | 70,000 | 100,000 |

※ 비수기 : 매년 1월 ~ 5월, 9월 ~ 12월  
성수기 : 매년 6월, 7월, 8월

| 개 정(안)   |                                                      |         |         |
|----------|------------------------------------------------------|---------|---------|
| (단위 : 원) |                                                      |         |         |
| 시설명      | 구 분                                                  | 이 용 료   |         |
| 주차장      | 《 삭제 》                                               | 《 삭제 》  | 《 삭제 》  |
| 야영장      | 노지사용료                                                | 6,000   |         |
|          | 데크사용료                                                | 10,000  |         |
| 산 막      | 26㎡ (8평형)<br>56㎡ (17평형)<br>79㎡ (24평형)<br>195㎡ (59평형) | (비수기)   | (성수기)   |
|          |                                                      | 30,000  | 60,000  |
|          |                                                      | 70,000  | 120,000 |
|          |                                                      | 80,000  | 170,000 |
|          |                                                      | 200,000 | 350,000 |

※ 비수기 : 매년 4월 ~ 6월, 9월 ~ 11월  
성수기 : 매년 1월 ~ 3월, 7월 ~ 8월, 12월

## 정선군공고 제2009-653호

## 수용재결신청에 따른 열람 공고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이 시행하는 “어천제축제공사”에 편입되는 토지 등의 수용을 위한 재결신청이 있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 31조 및 동법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본 공고기간 내에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9. 9. 28.

정 선 군 수

1. 사 업 명 : 어천제 축제공사
2. 사업시행자 : 주 소 강원도 원주시 단계로 283  
성 명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
3. 수용대상 토지 및 물건

| 수용토지의 표시          |        |               |            | 소 유 자 |                    | 관 계 인 |     | 비 고 |
|-------------------|--------|---------------|------------|-------|--------------------|-------|-----|-----|
| 소 재 지             | 지 번    | 물건의종류<br>및 규격 | 수량<br>(면적) | 성 명   | 주 소                | 성 명   | 주 소 |     |
| 정선군<br>화암면<br>석곡리 | 1238-5 | 관정            | 1식         | 조헌자   | 정선군 동면<br>석곡리 1240 |       |     |     |

4. 열람공고기간 : 2009. 9. 28. ~ 2009. 10. 12.(공고일 익일부터 14일간)
5. 기타사항 : 수용재결신청 관계서류는 정선군청 재난안전관리과 (하천관리팀 ☎ 033-560-2481)에 비치하오니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선군공고 제2009-657호

## 2009. 6. 1기준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35조의 규정에 의거 2009. 6. 1기준 개별주택가격을 다음과 같이 결정·공시하오니 결정된 개별주택가격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주택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께서는 이의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2009. 9. 30.

정 선 군 수

## 1. 2009년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

가. 가격기준일 : 2009. 6. 1.

나. 결정·공시대상 : 강원도 정선군 정선읍 봉양리 46-18번지 외 208호

다. 결정·공시사항 : 개별주택의 가격(토지·건물 일체)

## 2. 이의신청

가. 접수기간 : 2009. 9. 30 ~ 10. 30

나. 제 출 자 : 주택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

다. 제출장소 : 군청 세무회계과 및 읍·면사무소 민원실

라. 제출방법 : 개별주택가격 이의신청서 작성 제출

(군청 세무회계과, 읍·면사무소 민원실 비치)

마. 이의신청 처리 : 이의신청 만료일로부터 30일이내에 결정가격의 적정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정선군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개별통지

정선군고시 제2009-658호

개별주택가격 정정 결정·고시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37조의 규정에 의거 개별주택가격 산정과정에서의 오류를 정정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정정 결정·고시 합니다

2009. 9. 30.

정 선 군 수

1. 개별주택가격의 정정 결정·고시

가. 고시(가격)기준일 : 2009년 1월 1일

나. 정정대상 : 강원도 정선군 정선읍 애산리 667-1번지의 2필지

다. 고시사항 : 개별주택가격(토지, 건물 일체)

라. 고시방법 : 고시문 게시

2. 이의신청방법

정정 결정·고시 주택가격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주택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2009. 10. 30.까지 정선군청 세무회계과 및 읍·면사무소 민원실에 비치되어 있는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기타사항

의문사항에 대하여 정선군청 세무회계과 과표팀(☎ 033. 560-2149)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정선군공고 제2009-660호

공 시 송 달

성 명 : 이한균 외 671명 (내역 홈페이지 참조)

주소또는거소 : 경기도 부천시 오정구 원종동 298-8번지외 671개소

서류의 명칭 : 재산세 납세고지서

서류의 내용 : 2009년 9월 발송 재산세 납세고지서 반송분

위의 서류를 2009년 9월중 귀하께 송달 하고자 하였으나 주소 및 거소가 불분명하여 우편송달이 불가능하므로, 지방세법 제52조제2항 규정에 의하여 2009년 10월 31일로 납기를 변경하여 지방세를 납부하여 주시기를 공고합니다.

2009. 10. 1.

정 선 군 수

## 정선군공고 제2009-661호

## 765kV 신탈백-신가평송전선로 수용재결신청 열람공고

산업자원부 관보고시 제2007-34호(2007. 3. 13) 및 지식경제부 관보고시 제2008-212호(2008. 12. 24)로 승인된 765kV 신탈백-신가평 송전선로 선하지 권원 확보사업에 편입된 토지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같은 법률 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수용재결신청서 및 관건서류를 열람 공고합니다.

2009. 10. 1.

## 정 선 군 수

1. 사업의 명칭 : 765kV 신탈백-신가평 송전선로 선하지 권원확보사업
2. 사업 시행자 : 한국전력공사(경인건설처)
3. 토지수용내역 및 열람대상자

(단위 : m<sup>2</sup>, 원)

| 수 용 토 지 내 역 |      |    |        |       |            | 토지소유자 |                        | 비 고<br>(관계인) |
|-------------|------|----|--------|-------|------------|-------|------------------------|--------------|
| 소 재 지       | 지번   | 지목 | 원지적    | 편입면적  | 보상금액       | 성 명   | 주 소                    |              |
| 정선군 화암면 호촌리 | 산204 | 임  | 33,719 | 325   | 260,000    | 전주호   | 강원도 강릉시 왕산면 고단리 98-12  | 권상근          |
| 정선군 화암면 물운리 | 산199 | 임  | 20,231 | 570   | 456,000    | 이광수   | 강원도 정선군 남면 문곡리 113-1   |              |
| 정선군 화암면 화암리 | 산480 | 임  | 10,711 | 621   | 807,300    | 전돈규   |                        |              |
| “           | 산474 | 임  | 51,074 | 743   | 965,900    | 최동순   | 서울시 강남구 논현동 275 동부센트레빌 |              |
| 정선군 화암면 석곡리 | 산365 | 임  | 26,083 | 743   | 442,800    | 이철우   | 성루시 동대문구 청량리동 235-1    |              |
| “           | 산225 | 임  | 46,810 | 5,597 | 5,876,850  | 어일용   |                        | (주)삼탄        |
|             |      |    |        |       | 5,876,850  | 어성갑   |                        | (주)삼탄        |
| “           | 1258 | 전  | 1,534  | 1,029 | 6,894,300  | 최원규   |                        |              |
| “           | 1262 | 전  | 1,630  | 22    | 147,400    | 최원규   |                        |              |
| “           | 1259 | 임  | 3,927  | 48    | 96,000     | 전장성   |                        |              |
| “           | 산156 | 임  | 24,793 | 4,334 | 4,550,700  | 최갑순   |                        | 황대식          |
| 정선군 정선읍 덕우리 | 625  | 전  | 258    | 61    | 256,200    | 윤종희   | 강원도 정선군 임계면 봉산리 241-19 |              |
| 정선군 정선읍 복실리 | 128  | 임  | 4,430  | 3,235 | 10,190,250 | 정석준   |                        |              |
| “           | 산30  | 임  | 12,892 | 2,316 | 3,589,800  | 고용균   |                        |              |

4. 공고기간 : 2009. 10. 1 ~ 2009. 10. 14 (15일간)
5. 열람장소 : 정선군청 산업경제과
6. 의견제출 : 2009. 10. 14일까지 정선군 산업경제과로 토지수용에 관한 의견 제출
7. 기타 상세한 사항은 아래 장소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의처 : 서울시 중구 남산동 3가 11-10

한국전력공사 경인건설처 용지팀 (02-2096-4331)

정선군공고 제2009-665호

공 시 송 달

성 명 : 김광덕 외 17인

주소또는거소 : 서울특별시 동작구 노량진동 294-531(12/2)

서류의 명칭 : 지방세 납부고지서

서류의 내용

지방세 납부고지서를 2009년 9월 중 귀하의 주소지·거소지·사무소 등록지로 고지(일반우편·등기우편)하였으나 주소지 불명, 수취인 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기한내 고지가 불가하여 지방세법 제52조에 의거하여 공시송달 하오니 변경된 납기인 2009년 10월31일까지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9. 10. 5.

정 선 군 수

## 지방세 공시송달 내역(2009년도 9월분)

| 발송지                                              | 개인(법인)명 | 과세물건                                                         | 공고사유   |
|--------------------------------------------------|---------|--------------------------------------------------------------|--------|
| 서울특별시 동작구 노량진동 294-531 (12통2반)                   | 김광덕     | 토지 정선읍 여탄리 118번지 4023.0000㎡ 매매                               | 수령인없음  |
| 강원도 정선군 여량면 여량리 563 (3통4반)                       | 심재룡     | 토지 정선읍 덕송리 636번지 6397.0000㎡ 매매                               | 수령인없음  |
| 강원도 정선군 고한읍 고한리 136-17 (13통6반)                   | 임순애     | 토지 고한읍 고한리 136-17번지 117.0000㎡ 상속                             | 수령인없음  |
| 부산광역시 동구 초량동 866-2 (11통4반)                       | 전태산     | 토지+건물 고한읍 고한리 62-118번지 46.0000㎡ 건물 85.8㎡ 상속                  | 수령인없음  |
| 강원도 춘천시 석사동 740-16 (33통1반)                       | 김옥기     | 토지+건물 고한읍 고한리 352-6번지 1동 101호외 2필지 506.0000㎡ 건물 346.36㎡ 경락공매 | 수령인없음  |
| 강원도 평창군 평창읍 하리 55 (4통2반)                         | 전영순     | 토지+건물 신동읍 조동리 144번지 2동 109호 2.1000㎡ 건물 45.85㎡ 상속             | 수령인없음  |
| 서울특별시 성동구 하왕십리동 1000-701 (23통2반)                 | 윤성택     | 토지 남면 무릉리 590-6번지외 9필지 452.0000㎡ 매매                          | 수령인없음  |
| 서울특별시 강동구 길동 474 LG 강동자이아파트 101동 2002호 (62통1반)   | 나두환     | 토지 임계면 덕암리 2번지 4688.0000㎡ 매매                                 | 수령인없음  |
| 강원도 정선군 정선읍 봉양리 89-1 봉양주공1차아파트 101동 706호 (10통3반) | 허정훈     |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 수령인없음  |
| 강원도 정선군 고한읍 고한리 36 중앙아파트 2동 302호 (6통12반)         | 남황자     |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 이사감    |
| 강원도 정선군 고한읍 고한리 36 중앙아파트 2동 302호 (6통12반)         | 유은미     |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 수령인없음  |
| 대전광역시 서구 탄방동 834 한가람아파트 6동 1108호 (3통6반)          | 김옥순     | 정선읍 북실리 산 99-1 2호 (면적 13,223.0㎡)                             | 수취인미거주 |
| 서울특별시 강동구 명일동 332 명일엘지아파트 101동 113호 (3통9반)       | 박단숙     | 고한읍 고한리 산 31 1호 (면적 4,959.0㎡)                                | 수취인미거주 |
| 서울특별시 노원구 상계동 1078 현대2차아파트 202동 1201호 (19통6반)    | 권태현     | 신동읍 덕천리 산 111 (면적 77,851.0㎡)                                 | 수취인미거주 |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당산동4가 32-67 (9통7반)                    | 이현재     | 남면 무릉리 15-1 (면적 1,904.0㎡)                                    | 수취인미거주 |
| 서울특별시 강동구 천호동 451-20 오피스텔트레벨 315호 (25통7반)        | 엄인정     | 북평면 북평리 665-3 1호 외 1건 (면적 776.5㎡)                            | 수취인미거주 |
| 서울특별시 중랑구 면목동 서울중랑구면목동 505-12호 21/9              | 안장식     | 임계면 도전리 산 44 (면적 26,281.0㎡)                                  | 수취인미거주 |
| 충청북도 충주시 연수동 1627 연수힐스테이트 106동 1006호 (80통11반)    | 정옥현     | 화암면 건천리 316 외 6건 (면적 37,239.0㎡)                              | 수취인미거주 |